

부산지방법원 2024. 5. 8 선고 2024나4210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부산지방법원 2024. 5. 8 선고 2024나42109 판결

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. 1. 3 선고 2022가단116854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유한회사 A

피고, 항소인B

변론종결2024. 4. 3.

판결 선고2024. 5. 8.

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. 1. 3. 선고 2022가단116854 판결

주문

-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-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- 청구취지

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4 지분에 관하여 2020. 12. 30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0,917,083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20,917,0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,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[갑 제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, 소외 회사 내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존부 및 액수가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.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].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이준민

판사이미경

판사이효신

별지